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
법률시행령 (약칭: 전자어음법
시행령)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범계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전자어음법
시행령)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을 확대하여 기업의 거래
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함

3. 주요내용

가.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의 확대(안 제8조의2)

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외부감사대상 법인 및 자산총액 10억원
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
전자어음법 시행령) 일부개정령안

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전자어음법 시행
령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 중 “10억원”을 “5억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) 법 제6조의2에서 “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”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<u>10억원</u>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.	제8조의2(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5억원</u>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상사법무과	
연 락 처	(02) 2110 - 3638